

작품 내용

제 목	"저작권이 재밌어? "
내 용	“미안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교재 파일은 줄 수가 없을 것 같네.” 아마 그때가 내 삶에서 저작권이 가장 진지해진 순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대학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대학 교재는 차원이 달랐다. 책은 두꺼워졌고, 글자는 작아졌으며, 수업은 내가 읽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았다. 그래도 한 가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교재를 쓴 교수가 직접 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책을 쓴 분이라면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시겠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저작권 때문에 자신이 쓴 책의 파일도 줄 수 없다니. 음악이나 영화, 게임 같은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이 책을 읽고 싶은 사람에게까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욱 낯설었던 것은 책을 쓴 사람조차 그 문을 혼자 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저작자야말로 열쇠를 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뜻만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라면 그 문은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 의문은 나를 구내서점으로 이끌었다. 빼곡한 책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법』이라고 적힌 책 한 권을 찾아냈다. 당장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책은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부딪히게 될 문제라면, 한 번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리고, 때로는 한 문장을 몇 번씩 되짚으며 책을 읽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교수의 말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저자뿐 아니라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여 인쇄·유통하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는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저자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도 생긴다. 파일이 무단으로 퍼지면 출판사의 판매뿐 아니라 저자에게 돌아갈 대가도 줄어들 수 있다. 작품은 저자의 손에서 태어나지만,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온 뒤에는 여러 사람의 권리와 생계가 얹힌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 처음의 의문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무슨 수로 책을 읽어야 할까?’ 뜻밖에도 그 답 역시 저작권법 안에 있었다. 저작권법 제33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바꾸어 복제·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일정한 시설은 시

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녹음자료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저작자나 출판사의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더라도 법이 미리 허용해 둔 영역이다. 법은 이를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이라 불렀지만, 내게 그것은 책을 읽을 가능성을 넓히는 규칙이었다.

그제야 내가 읽어 온 책들이 다르게 보였다. 손끝으로 보았던 점자책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보았던 녹음도서도 저작권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책을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남겨 둔 통로를 따라 내게 온 것이었다. 녹음도서가 시작될 때마다 들리던 “이 녹음도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라는 안내도 같은 의미였다.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되, 그 문이 무단복제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지켜 달라는 부탁이었던 셈이다.

물론 법에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읽고 싶은 책이 저절로 점자책이나 녹음도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찾는 책은 대체자료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법이 길을 열어 두었어도, 실제로 책을 대체자료로 바꾸고 검수해 전달하려면 사람과 비용, 시간이 필요했다. 법적 가능성과 실제 독서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간극을 메울 제도도 갖추어졌다. 도서관법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출판사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출 받은 파일을 활용해 점자자료와 디지털음성자료 등을 제작하고 제공한다. 점자도서관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의 노력에 더해, 파일의 유출 위험을 줄이면서 대체자료 제작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출판사의 협력을 끌어낼 기반이 생긴 것이다. 저작권법이 법적 이용의 가능성을 열었다면, 도서관법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그 가능성을 실제의 독서로 이어주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니 처음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던 두 가지 요구가 반드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파일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가 없다면 출판사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파일의 안전만을 앞세워 장애인의 독서를 외면한다면, 저작권이 지향하는 문화의 향유와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 창작자가 계속 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도 그렇게 만들어진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맞물릴 때 두 가지가 비로소 함께 가능해진다.

‘읽을 책이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시작한 공부는 어느새 나를 저작권법 연구자의 길로 이끌었다. 돌아보면 교재 파일을 받지 못한 일은 분명 답답하고 불편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저작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지 그토록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작권이 재밌어?”

나는 지금도 이 질문과 자주 맞닥뜨린다. 한때 ‘저작권’이라는 말은 내 앞에서 책으로 가는 문을 닫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저작권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저작권은 창작자를 위해 문을 지키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그 문을 열어 주는 규칙도 품고 있다. 어려운 것은 문을 무조건 활짝 열거나 굳게 잠그는 일이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필요가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끊임 없이 묻는다. 필요한 것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거듭되는 조정이다. 한 번 정해 두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대가 바뀔 때마다 다시 묻고 다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일이다. 보호와 이용은 때때로 서로를 밀어내지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 그 긴장 때문에 저작권은 어렵고 끝이 없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아직도 재미있다.